



주식업무 단위별 체크리스트 (7)

주주총회 소집

김연수 대리(조사1팀 법제조사파트)

※ 본 자료는 상장회사 주식·공시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주식업무를 주제별로 나누어 각 단위별로 실무자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
상장회사에서 요청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매월 연재할 계획이다.<편집자 註>

※ 법규 약어표

- (거래법) 증권거래법
- (발행공시규정)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- (상장규정)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
- (공시규정)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
- (예탁결제규정)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

1. 주주총회 소집

<p>1. 소집의 결정 (관련 법규) 상법 제362조, 제366조, 제412의조의3, 제467조)</p>	<p>(1)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가? ※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.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,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결의로 정해야 함.</p> <p>(2) 소수주주, 감사(감사위원회) 및 법원의 청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없었는가? ※ 소액주주의 보호나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수주주, 감사(감사위원회), 법원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.</p>	
--	---	--

※ “체크”란은 회사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담당자가 점검할 사항을 기재하는 란임.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<p>2. 소집시기 (관련 법규) 상법 제365조 거래법 제186조의2</p>	<p>(1)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는가? ※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음.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.</p>	
<p>3. 소집지와 총회장소 (관련 법규) 상법 제364조</p>	<p>(1) 주주총회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가? ※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개최함.</p> <p>(2)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불편함이 없고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인가? ※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 소의 사유가 됨.</p>	
<p>4. 회의목적사항</p>	<p>(1)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? ※ 주주총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결의사항에 앞서 감사보고나 영업보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, 회사합병의 보고와 같이 이 보고를 마쳐야만 합병등기가 가능하므로 비록 보고사항이지만 반드시 회의목적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.</p> <p>(2) 주주총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을 회의의안으로 하였는가? ※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통지·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음. 통지·공고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 결의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더라도 결의취소의 원인이 됨.</p>	

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<p>(3) 중요도에 따라 심의순서를 배열하였는가? ※ 심의순서에 따라 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의순서를 배열함(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등).</p>	
<p>5.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(관련 법규) 상법 제363조의2 거래법 제191조의14</p>	<p>(1)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제안권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? ※ 일정한 주식(상법 3%, 거래법 1%(자산 1000억이상 0.5%))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6주전까지 서면으로 주총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.</p> <p>(2) 제안내용이 안전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닌가? ※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주제안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은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사항 -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한하는 경우 -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- 임기중에 있는 임원에 해임에 관한 사항 -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등 	
<p>6. 주주명부폐쇄·기준일의 설정 (관련 법규) 상법 제354조</p>	<p>(1) 주주 및 질권자의 확인을 위하여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을 설정하였는가? ※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의 설정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님. 그러나 주주의 수가 많고 변동이 많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확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함.</p> <p>(2)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않았는가?</p>	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<p>※ 주주명부 폐쇄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. 종전에는 주주명부 폐쇄기관이 통상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 정도로 되어 있었으나, 최근 2주간으로 단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</p> <p>(3)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였는가?</p> <p>※ 정기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관에 정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공고의무가 없음.</p>	
<p>7. 소집의 철회·변경여부</p>	<p>(1) 주주총회 소집 통지·공고 후 소집자체의 철회 및 목적사항의 일부내용의 변경이 있었는가?</p> <p>※ 주주총회 소집통지·공고 후에도 소집 자체를 철회할 수 있고, 목적사항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일시·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.</p> <p>(2) 의안의 철회·변경시 통지나 공고는 변경된 회의의 2주전 시간적 간격을 준수하였는가?(철회·변경이 있는 경우)</p> <p>※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시간·장소의 변경은 소집 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면 허용되나, 총회 개최시각을 앞당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.</p>	

2. 소집통지·공고 및 신고보고 사항

<p>1.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집통지 (관련 법규) 상법 제363조 거래법 제191조의10, 동시행령84조의17</p>	<p>(1) 주주총회 회일을 정하여 회일의 2주간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였는가?</p> <p>(2) 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였는가?</p> <p>※ 회사가 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적법하게 한때에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한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되고, 이 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</p> <p>(3) 중요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발송하였는가?</p>	
---	---	--

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<p>※ 정관의 변경, 자본의 감소, 합병계약서의 승인,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내용 등</p> <p>(4) 소집통지를 소액주주에게 신문공고로 갈음할 것인가?</p> <p>※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주주에 대하여 소집공고를 신문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.</p> <p>(5) 신문공고로 소집통지를 대체한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였는가?</p>	
<p>2. 주주총회 소집관련 신고·공시 (관련 법규) 거래법제191조의10, 동시행령84조의17 발행공시규정 제69조 상장규정 제55조 공시규정 제7조</p>	<p>(1)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융위에 공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, 본지점, 명의개서 대행회사, 금융위, 거래소 등에 비치하였는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,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-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일정사항(①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%이상인 거래, ②당해 사업년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%이상인 경우의 당해 거래) - 경영 참고사항(①영업현황 등 사업개요, ②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) <p>(2)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였는가?</p> <p>※ 이사회에서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함.</p>	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<p>(3)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의 결정이 있는 때 지체 없이 신고하였는가? ※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.</p> <p>(4)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사유발생당일 수시공시 하였는가? ※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선임·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·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여 명기함)</p>	
<p>3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가 있는 경우 (관련 법규) 거래법 제199조, 동 시행령 제85조, 발행공시규정 제69조, 공시규정 제7조</p>	<p>(1)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 사본을 지정비치장소 2일전에 금융위원회(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서류)에 제출하였는가? ※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시도됨.</p> <p>(2)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·비치하였는가? ※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, 참고서류는 회사의 영업현황에 관한 자료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그 세부내용을 기재하여야 됨.</p>	
<p>4.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제도 이용할 경우 (관련 법규) 거래법 제174조의6 예탁결제규정 제38조의2</p>	<p>(1)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 하였는가? ※ 주주총회 소집·통지공고시 포함될 내용</p> <p>①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규정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주전까지 의결권의 직접행사,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 -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뜻과 이유 <p>②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방법</p>	



주요 점검사항 및 관련법규	세 부 점 검 사 항	체 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 주주총회에서 예탁원의 참석주식수를 제외한 다른 참석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다는 뜻 (1)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 하였는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주총회 소집·통지공고시 포함될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규정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주전까지 의결권의 직접행사,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 -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뜻과 이유 ②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 주주총회에서 예탁원의 참석주식수를 제외한 다른 참석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다는 뜻 ③ 실질주주의 의사표시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질주주의 의사표시 대상기관, 방법 및 기한 - 의사표시 수령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상호, 주소 및 팩시밀리번호 (2) 주주총회 회의를 7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였는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 요청시 첨부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문 또는 공고문 사본1부 - 법인 인감증명서 1부 - 발행회사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선임을 의회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협약서 1부 	